

제5호(2020년 7월호)



청렴가득, 행복가득

"열린·혁신행정으로 신뢰받는 '청렴한 제주' 실현"



제주도 청렴일지

「공공재정환수법*」 설명회 개최

*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의 환수 등에 관한 법률

- 일시 : 2020. 7. 14.
- 지방자치단체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처분 절차 교육

* 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, 행정시, 감사위원회, 교육청, 제주대학교 등

공공재정환수법 시행 : '20. 3. 24

찾아가는 청렴교육 실시

- 대상 : 도 소속 101개 실과
- 부서 청렴교육 내용

* 청렴도 제고 시책 공유 및 강화
* 부패사태 및 재발방지 대책 공유
* 도민을 위한 친절성 함양 교육

교육일정 : '20. 7. 1. ~ '20. 9. 29.

※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회의 및 워크숍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진행됩니다.

도지사에게 직접 신고 할 수 있습니다

공사·용역·보조금 및 각종 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직자가
금품·향응을 요구하거나 그 외 부당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,

공직자 신고센터(064-710-3650) 또는 도 홈페이지 '원지사 핫라인'

(www.jeju.go.kr)으로 언제든지 신고 바랍니다.

공공재정환수법

핵심내용

1 공공재정환수법은 무엇인가요?

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,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,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,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.



부정이익의 환수



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



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포

2 신고방법, 절차를 알고 싶어요!



“안전하게” 신고자 보호

누구든지 부정청구등을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, 감사원, 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
“세상을 바꾸는 용기” 신고자 보상·포상

신고자의 신고로 인해 부정이익이 환수되거나, 제재부가금 부과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포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. 알쏭달쏭 청렴퀴즈

A+B의 합은?

- 「공공재정환수법」에서는 최대 A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.
-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신고센터 번호는 064-710-B입니다.

※ 청렴퀴즈 정답을 7월 31일까지 이메일 (kya8890@naver.com)로 성함, 연락처, 주소와 함께 보내주세요. 10명을 선정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.